



페이지	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(2024. 05. 17. 시행)
1권 p.136	수정전 29. 문화재 지정문화재 중 건축물
오려 붙여주세요.	수정 후 29.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

1권 p.177	수정 후 1. 소화설비 가. 소화기구 1) 연면적 33m ² 이상인 것. 다만,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$\frac{1}{2} \uparrow$ 으로 설치할 수 있다. 2) 1)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,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) 터널 4) 지하구 ①암기법 33 · 가지터전 국
-------------	---

1권 p.180	수정전 바. 물분무등소화설비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) 1) ~~~ 2) ~~~ ~~~ ~~~ 8)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
오려 붙여주세요.	수정 후 8)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(문화유산자료 제외) 또는 천연기념물등 (자연유산자료 제외) 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



	수정전
1권 p.180 수정 해주세요.	사. 옥외소화전설비(아파트등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,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) 1) ~~~ 2) 문화재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) ~~~

수정 후

2)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	수정전
1권 p.182 수정 해주세요.	사.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1) ~~~ 2) ~~~ 3) ~~~ 4) 문화재 중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~~~ ~~~

수정 후

4) 문화유산 중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	수정전
1권 p.191 수정 해주세요.	6. 옥외소화전설비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· 방수량 · 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

수정 후

6. 옥외소화전설비 문화유산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· 방수량 · 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